

##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표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23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2. 28.

발의자 : 김한표 · 박맹우 · 장석춘

이현승 · 원유철 · 김수민

임이자 · 여상규 · 이채익

정병국 · 이종명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.

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 신설 등).

##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
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  | <p>제14조의2(금리인하 요구 등) ①</p> <p><u>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</u><br/> <u>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</u><br/> <u>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</u><br/> <u>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</u><br/> <u>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</u><br/> <u>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</u><br/> <u>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</u><br/> <u>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</u><br/> <u>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</u><br/> <u>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</u><br/> <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|
| 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<br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<br>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<br>부과한다.<br><br>1. ~ 4. (생략)<br><br><u>&lt;신 설&gt;</u> | <p>제40조(과태료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의2.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</u><br/> <u>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요구</u><br/> <u>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</u><br/> <u>니한 상호저축은행</u></p>  |

5. ~ 14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5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